



금 용 위 원 회

수신자 경제개혁연대 귀중(서울특별시 종로구 운니동 65-1 오피스텔월드 606호)
(경유)
제목 질의 회신

1.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하오며,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신 공문 2009-1001호 ('09. 10. 12 접수)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.

2. 우리 위원회가 해당 금융기관에 사실조회를 의뢰하여 회신을 받은 바, 귀 기관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다만, 정부의 과징금 및 가산금 징수업무는 국세청이 소관기관이므로 국세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○ 질의 1) 및 2)에 대하여

해당 금융기관*에 삼성생명, 삼성전자, 삼성SDI 주식의 실명(이건희) 전환에 대한 과징금 등 징수 여부를 조회한 결과, 해당 금융기관은 과징금 원천징수 및 납부 사실이 없는**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
* 삼성증권, 신한금융투자(구 굿모닝신한증권), 한국투자증권, 대우증권, 한양증권, 한화증권, 하이투자증권

** 주요 이유

가명이나 허무인 명의가 아닌 주민등록표상의 실명으로 개설된 계좌로서 실명전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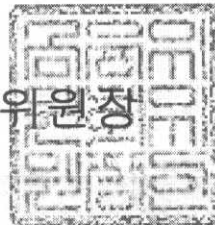
○ 질의 3) 및 4)에 대하여

금융기관에 계좌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실명전환의무기간('93.8.13~10.12) 내에 실명전환하여야 하고, 동 의무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에 기존비실명자산(실명제 실시전에 금융거래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 중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)의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였다면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바,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가 없

었던 주식이라면 실명전환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한편, 동 의무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실지명의(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)가 확인되는 경우라면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금융위원회 위원장



담당 김동건 행정사무관 조총행 서기관 대결 12/02 과장 전결
유영준

협조자

시행 은행과-3317 (2009. 12. 02.) 접수
우 150-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/ <http://www.fsc.go.kr>
전화 02-2156-9820 전송 02-2156-9809 / nalzzin@fsc.go.kr / 대국민공개